

보석허가청구

사건번호 및 재판부 : 2000고단 000호 (제 0단독)

사 건 명: 폭행

피 고 인: 0 0 0

직 업:무 직

생 년 월 일 : 19○○년 ○월 ○○일생

청 구 취 지

"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한다."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- 1.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주거가 일정하여 도주의 우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없는 등, 형사소송법이 정한 필요적 보석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.
- 2.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, 그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점들을 참작하시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하여 주시기바랍니다.
- 3. 보석보증금은 신청인이 보증보험회사와 체결한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 부 서 류

1. 가족관계증명서

1통

2. 주민등록등본

1통

4. 합의서

1통 1통



20ㅇㅇ년 ㅇ월 ㅇ일

위 피고인의 처 〇 〇 〇 (인)

			Sorking the state of the state	한법률구조공단
제출법원	사건계속 법원		www.klar	
신청권자	피고인, 변호인, 법정대리인, 배우자, 직계친족, 형제자매, 가족, 동 거인, 고용주			
제출부수	신청서 및 부본 각1부	관련법규	형사소송법 94~100조의2, 102~104조의2	
불복절차 및 기간	· 청구기각에 대하여 피고인 및 청구인 보통항고(형사소송법 402조) · 기간의 제한 없음. 단,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(형사소송법 404조)			